

1. 개정이유

시외버스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 완화,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의 확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외버스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 완화(안 제40조의3제1항)

시외버스를 활용한 소화물 운송서비스 확대 및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시외버스 소화물 운송 제한규격 완화

나.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안 별표3 비교)

현재 전세버스의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은 등록 지역(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등록 지역과 서로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차고지의 설치를 허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20킬로그램”을 “가로·세로·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센티미터 이하이거나 총중량이 30킬로그램”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 제3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3(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은 부피가 <u>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u> 이거나 <u>총중량이 20킬로그램</u> 미만이어야 한다.	제40조의3(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 등) ① ----- ----- ----- -- <u>가로·세로·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센티미터 이하이거나 총중량이 30킬로그램</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